

올겨울 일본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첫 발생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

일본 고병원성 AI 발생경향 해마다 우리나라와 유사
가금농가 소독 및 외부차량 출입 통제 등 강화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27일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사카현 가시마시(일본 남단)의 산란계 농장(약 4만수 사육)에서 올 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 가금농장의 차단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북부지역)에서 폐사한 큰부리까마귀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도도부현에서 25건이 검출되고 있으며, 가금농장도 지난 11월 24일 사카현 산란계 농장과 11월 26일 이바라키현의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 증가에 따라 신고되어 금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를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부터 국내 야생조류 분변·포획 및 폐사체에 대해 예찰·검사를 강화해 총 6,543건을 검사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가금농장의 발생도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겨울철에 동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올 겨울철 국내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한국 : ('20/'21) 11.26부터 109건 발생, ('21/'22) 11.8부터 47건, ('22/'23) 10.17부터 75건

일본 : ('20/'21) 11.5부터 52건 발생, ('21/'22) 11.10부터 25건, ('22/'23) 10.28부터 84건

또한 일본 농림수산성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가 일본에 유입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겨울 철새의 도래 경로가 비슷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철새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시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가금농장 차단방역수칙

◎ 가금농장 내 시바이러스 유입 차단조치

- (출입 통제) 농장 내부로 출입하는 차량·사람을 엄격하게 통제
- (2번 소독) 농장 내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실시
 - *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
- (근로자) 농장주는 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점검
 - 특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외국인 근로자가 철새도래지, 저수지 등에서 낚시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불필요한 모임 자제

◎ 축사 내 시바이러스 유입 차단조치

- (차단조치)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신발)로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전용 작업복(또는 방역복) 착용
- (물품·장비) 축사 내부로 파레트·난좌·합판, 기계·장비(왕겨살포기, 로타리기) 반입 전, 반드시 세척·소독
- (오리 분동) 분동(이동)통로, 운반용기, 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분동통로에 비닐 등을 도포하여 오리 이동 시 교차오염 방지
- (야생동물) 야생동물 차단을 위해 축사 구멍·틈새, 집란·계분벨트,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차단망·덮개 등 설치
 -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사료·폐사축·왕겨 등을 매일 청소하여 사전에 제거하고, 구서제(살서제) 등을 통한 구서작업 철저
- (출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또는 쪽문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폐쇄(시건장치 포함) 조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 농장진입로 폭 2m이상 생석회 농분이 도포 출입구 고정식·고압분무기 2단계 소독 ※ 1주일 간격 반복 도포 ※ 고장시 소독시설은 소독한 후 고압분무기로 자량의 비위와 하부 등 추가 소독	농장 내부 관리 철저 농장 내부(축사 밖) 매일 청소·소독 부출입구·뒷문 폐쇄 ※ 소독약은 음분용량 권장 희석배수 준수 - 농장 내 야생조수를 유인 요소(사료·폐사·왕겨) 매일 청소소독 - 전실·이설시 축사 뒷문(뒷문) 폐쇄 - 방역·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 폐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출입시 전용장화 갈아신기, 손소독(위생장갑 착용시 포함) 실시 전실 ※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 - 전실에 전용장화·손소독제 비치·전실 매일 소독 - 신발(장화)에 묻은 유기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장화 갈아신기용 구조물 또는 발판 설치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구, 내부 통로, 환기구 등 집중 소독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 및 안개분무 소독 -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